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전부개정예규안

1. 개정이유

- 「공탁규칙」의 개정(대법원규칙 제3119호, 2024. 1. 26. 시행)으로 피공탁자의 공탁금에 대한 신속한 권리행사를 위하여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형사공탁 관련 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형사공탁사실통지서에 문서확인번호가 포함되도록 함(안 제9조제1항 제4호)
- 발급담당자가 형사공탁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지체 없이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를 발급하여 공탁소에 송부하도록 함(안 제11조)
- 피공탁자 정보 제공 요구에 관한 구체적 절차를 정함(안 제12조)
-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 요청에 따른 구체적인 발급 절차 및 발급 불가 사유를 명시함(안 제13조)
-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의 진위 확인 방법을 정함(안 제16조)
- 피공탁자뿐만 아니라 포괄승계인이나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도 비실명 처리대상으로 정함(안 제17조)
- 공탁물 회수동의서 제출 방식 등을 정함(안 20조)

3.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전부개정예규안

붙임과 같음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전부개정예규안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공탁법」 제5조의2 형사공탁과 그와 관련된 재판 업무처리에 관하여 「공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9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형사공탁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공탁신청

제2조(군사법원 사건의 공탁) 군사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형사공탁은 별 표 2 기재 군사법원 소재지의 지방법원 본원 공탁소에 할 수 있다.

제3조(법령조항의 기재) 공탁자는 공탁서에 법령조항으로 공탁법 제5조의2 를 기재한다.

제4조(피공탁자 성명의 기재) 공탁자는 공소장·조서·진술서·판결서(이하

“공소장 등”이라 한다)에 피해자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탁서에 그 성명을 기재하고, 공소장 등에 피해자의 성명 중 일부가 비실명 처리되어 있거나 가명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탁서에도 그대로 기재하되, 가명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괄호하여 가명임을 표시한다.

제5조(공탁원인사실의 기재) ① 공탁자는 공탁원인사실로서 피해 발생시점, 피해 장소,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② 공탁자는 공탁서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예시: 공탁자는 0000. 0. 0. 00:00경 0시 00구 00로 0길 0, 00식당 앞에서 피해자 홍길○을 폭행한 사실과 관련하여 손해배상금(피해보상금, 형사위로금, 위자료 등)을 홍길○에게 지급하려 하였으나 재판기록·수사기록 중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열람·복사 불허가 등의 사유로 인하여(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금지하고 있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으므로 이를 공탁함]

제6조(공탁원인서면) 규칙 제83조제3호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이란 다음 각 호의 서면을 말한다.

1. 해당 형사사건에 적용되는 법령 등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금지하거나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열람·복사를 할 수 없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공소장, 재판장에 의하여 불허가된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서 사본 등)

2. 그 밖의 규칙 제83조제3호에 해당함을 공탁관이 확인할 수 있는 서면 제7조(피공탁자 성명의 비실명 처리) 공탁관은 피공탁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공탁서에 기재된 피공탁자의 성명 등을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전산시스템”이라 한다)에 아래 각 호의 방식으로 비실명 처리하여 입력한다.

1. 공탁서에 피공탁자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공탁관은 전산시스템에 성만 입력하고 이름은 입력하지 아니한다.
2. 공탁서의 피공탁자 성명 중 일부가 기호처리 방식(○, □, △, ◇ 등으로 변환하여 표시하는 방식)으로 비실명 처리된 경우 공탁관은 전산시스템에 공탁서에 기재된 대로 입력한다.
3. 공탁서에 피공탁자 성명 대신 가명이 기재된 경우에 괄호하여 가명임을 표시하여 입력한다.

제3장 형사공탁 공고 등

제8조(형사공탁 공고) ① 공탁관은 전자공탁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공탁소 및 공탁번호
2. 공탁신청 연월일
3. 공탁물
4. 공탁서에 기재된 피공탁자의 성명. 다만, 피공탁자의 성명이 비실명 처리되어 있지 않거나 가명이 아닌 경우에는 성(姓)을 제외한 이름은 비실명 처리한다.

5.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및 공소장에 기재된 검찰청과 사건번호

②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피공탁자의 성(姓)이 별표 3 기재 이외의 성(姓)일 경우 공탁관은 피공탁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피공탁자의 성명을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규칙 제84조제2항에 따른 공고 내용 중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경우 공탁관은 이를 수정한 후 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 규칙 제30조제4항에 따른 공탁서 정정신청이 수리된 때에도 이와 같다.

제9조(형사공탁사실의 통지 등) ① 공탁관은 공탁물납입사실의 전송이나 공탁물품납입통지서를 받은 때에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별지 제4호 양식의 형사공탁사실통지서를 피공탁자별로 작성하여 규칙 제85조제1항의 법원 및 검찰에 통지서 원본을 우편 또는 사송의 방법으로 송부한 후 통지서 사본은 공탁기록에 편철한다.

1. 공탁사건 정보: 공탁번호,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및 사건명, 공소장에 기재된 검찰청과 사건번호, 공탁물, 공탁 연월 일

2. 공탁당사자 정보: 공탁자 성명, 피공탁자 성명

3. 규칙 제83조제2호 서면의 명칭

4. 문서확인번호

② 규칙 제85조제1항에 따른 통지의 내용 중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경우 공탁관은 이를 수정한 후 제9조제1항에 따라 정정통지를 하여야 한다. 규칙 제30조제4항에 따른 공탁서 정정신청이 수리된 때에도 이와 같다.

③ 제1항, 제2항의 형사공탁사실통지서 또는 형사공탁정정사실통지서 원

본은 해당 형사사건의 공판기록에 편철한다.

④ 재판장은 제1항, 제2항의 형사공탁사실통지 또는 형사공탁정정사실통지를 받은 경우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검사가 피해자를 위하여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였고 그 변호사(이하 “피해자 변호사”라 한다)의 선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피해자 변호사에게 형사공탁 사실을 고지한다. 이 경우 피해자가 형사공탁 사실을 고지 받는 데에 동의한 때에는 피해자에게도 형사공탁 사실을 고지한다.

⑤ 제4항의 고지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 팩스,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⑥ 형사공탁이 이루어진 경우 피해자와 피해자 변호사는 해당 형사사건에서 이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4장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 절차

제10조(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담당자)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이하, “동일인 증명서”라 한다)의 발급 사무는 형사공탁의 원인이 된 형사사건(상소 등으로 다른 법원에서 사건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그 사건을 의미한다. 이하 “형사본안사건”이라 한다) 담당재판부의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법원주사보(이하 “발급담당자”라 한다)가 처리한다.

제11조(동일인 증명서 발급 등) 공탁관으로부터 형사공탁사실 통지를 받은 발급담당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별지 제10호 양식

의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하여 공탁관에게 우편 또는 사송의 방법으로 송부하고, 증명서 사본을 공판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1. 형사본안사건: 사건번호, 재판부, 사건명
2. 공탁사건정보: 공탁번호, 공탁물, 공탁서 기재 형사사건, 공탁서 기재 피공탁자 성명
3. 피공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휴대전화번호)
4. 형사공탁사실통지서에 기재된 문서확인번호

제12조(피공탁자 정보 제공 요구) ① 규칙 제86조제3항의 경우 발급담당자는 별지 제11호 양식의 피공탁자 정보 제공 요구서를 공판검사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 또는 사송의 방법으로 송부하고, 그 사본을 공판기록에 편철한다.

② 공판검사로부터 피공탁자 정보 회신서가 제출된 경우 발급담당자는 제11조에 따라 동일인 증명서 발급 등의 절차를 처리한다.

제13조(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 요청) ① 동일인 증명서가 발급·송부되지 않은 경우 공탁물을 출급하거나 공탁물 회수동의서를 제출하려는 사람은 규칙 제86조제2항의 구분에 따른 법원 또는 검찰을 방문하거나 우편이나 팩스, 전화 등 간이한 방법으로 동일인 증명서 발급·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발급담당자는 동일인 증명서 발급·송부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지체 없이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하여 공탁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1.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및 이를 준용하는 법률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신원관리카드에 등재·관리되어 조서 등을 통해

- 피해자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2. 규칙 제86조제3항에 따라 공판검사에게 피공탁자 인적사항의 제공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 3. 검사가 제출한 증거서류에도 불구하고 피공탁자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4. 그 밖의 사유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법원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제5장 지급절차 등

제14조(동일인 증명서 접수) 동일인 증명서를 송부받은 공탁관은 그 서면에 접수인을 날인하고, 수령일자 및 발급기관을 해당 기록표지에 기재한 다음 공탁기록에 편철한다.

제15조(피공탁자 개인정보 전산등록) ① 공탁관은 동일인 증명서가 접수된 때 그 서면의 기재사항을 피공탁자 개인정보관리에 전산등록하여,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한다.

② 공탁관은 동일인 증명서 외에 피공탁자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면이 제출된 때 제7조에 따라 입력된 피공탁자 성명을 불러오기 방식으로 전산등록 하고, 나머지 인적사항은 전산등록 하지 아니한다.

제16조(동일인 증명서의 진위여부 확인) ① 공탁관은 동일인 증명서와 공탁서 등 공탁기록을 대조하여야 하고, 특히 형사공탁사실 통지서 기재 문서확인번호와 동일인 증명서 기재 문서확인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검찰이 발급한 동일인 증명서가 송부된 경우 공탁관은 형사사법포털을 이용하여 위·변조방지바코드를 검증하는 방법으로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한다.

제6장 열람·복사절차

제17조(비실명 처리의 범위) 규칙 제87조에 따라 비실명 처리할 피공탁자, 그 포괄승계인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인적사항(이하 “비실명처리대상정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명과 그에 준하는 것(호, 아이디, 닉네임 등)
2. 주소 등 연락처(거주지,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3. 금융정보(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4. 기타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제18조(열람·복사 제공의 방식) 공탁관계서류에 대한 열람·복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 공탁관은 제14조 기재 비실명처리대상정보에 접착식메모지, 접착식메모테이프, 라벨지 등을 부착하여 복사한 사본 또는 비실명처리대상정보의 내용을 알아볼 수 없도록 검은색으로 칠한 사본을 열람·복사의 청구에 제공한다.

제19조(사실증명 제공의 방식) 공탁관은 공탁관계서류 및 전자기록에 나타난 정보에 대하여 사실증명 청구가 있는 경우 비실명처리대상정보의 내용을 전산 또는 수작업으로 가리거나(‘○, * 등’ 처리) 기재하지 않고 제공한다.

제7장 공탁물 회수동의서 제출 절차

제20조(공탁물 회수동의서 제출) ① 피공탁자는 해당 공탁소에 별지 13호 양식의 공탁물 회수동의서(이하 “회수동의서”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② 공탁관은 회수동의서가 제출된 경우에 그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을 말한다) 및 다음 각 호의 서류에 의하여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회수동의서에 인감도장이 날인된 경우: 발급일로부터 3개월 내의 인감증명서

2. 회수동의서에 서명한 경우: 발급일로부터 3개월 내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③ 제1항에서 동일인 증명서가 공탁소에 송부되기 전인 경우 피공탁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법원 또는 검찰에 동일인 증명서 발급·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4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사건에 관한 적용례) ① 이 예규는 그 시행 전에 접수되어 시행 당시까지 공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공탁관은 제16조에 따른 동일인 증명서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하여 별지 제4호 양식의 형사공탁사실통지서 여백에 별표 4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후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및 검찰에 다시 송부한다.

[별표 1]

양식 목록

양식 번호	명 칭	관련 공탁규칙 조문	비 고
1	금전 공탁서(형사공탁)	제20조, 제82조	제3조부터 제6조까지
2	형사공탁 공고	제84조	제8조
3	형사공탁 정정공고	제84조	제8조제3항
4	형사공탁사실통지서	제85조제1항	제9조제1항
5	형사공탁정정사실통지서	제85조제1항	제9조제2항
6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서(형사공탁)	제23조제1항	
7	형사공탁사실 고지서 (재판양식 B4970)	제85조제2항	제9조제4항
8	형사공탁정정사실 고지서 (재판양식 B4970-1)	제85조제2항	제9조제4항
9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 요청서(재판양식 B4971)	제86조제5항	제13조
10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재판양식 B4972)	제86조제1항	제11조
11	피공탁자 정보 제공 요구서 (재판양식 B4973)	제86조제2항	제22조제3항
12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 (전화 등)요청 접수처리 (재판양식 B4974)	제86조제5항	제13조
13	공탁물 회수동의서		제20조

[별표 2]

군사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제2조 관련)

군사법원의 명칭	공탁소
중앙지역군사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지역군사법원	대전지방법원
제2지역군사법원	수원지방법원
제3지역군사법원	춘천지방법원
제4지역군사법원	대구지방법원

[별표 3]

형사공탁 공고 대상 성(姓)(제8조 관련)

순번	성(姓)	순번	성(姓)
1	강	21	양
2	고	22	오
3	곽	23	우
4	구	24	유
5	권	25	윤
6	김	26	이
7	나	27	임
8	남	28	장
9	노	29	전
10	문	30	정
11	박	31	조
12	배	32	주
13	백	33	진
14	서	34	차
15	성	35	최
16	손	36	하
17	송	37	한
18	신	38	허
19	심	39	홍
20	안	40	황

[별표 4]

형사공탁사실통지서 재송부	
대법원 행정예규 0000호 부칙에 의함	
○○지방법원(○○지원) 공탁관 ○○○	인

1. 서명 또는 날인을 하되, 대리인이 공탁할 때에는 대리인의 성명, 주소(자격자대리인은 사무소)를 기재하고, 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2. 공탁금 납입 후 은행으로부터 받은 공탁서 원본을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공탁금 회수청구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국고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4. 공탁서는 재발급 되지 않으므로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5. 피공탁자란의 성명은 공소장·조서·진술서·판결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성명(성, 가명 포함) 그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동일 사건에 피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의 성명(성, 가명 포함) 그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6. 성명란 : 공소장, 조서, 진술서, 판결서에 “홍길동” 이 기재된 경우 “홍길동” 을, “홍○동” 이 기재된 경우 “홍○동” 을, “홍길동(가명)” 이 기재된 경우에 “홍길동(가명)” 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7. 공탁원인사실란 : ① 피해발생시점, 피해장소,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② 공탁자는 공탁서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공탁자는 0000. 0. 0. 00:00경 0시 00구 00로 0길 0, 00식당 앞에서 피해자 홍길○을 폭행한 사실과 관련하여 손해배상금(피해보상금, 형사위로금, 위자료 등)을 홍길○에게 지급하려 하였으나 재판기록·수사기록 중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열람·복사 불허가 등의 사유로 인하여(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금지하고 있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으므로 이를 공탁함]

[별지 제2호 양식]

○ ○ 법 원 형사공탁 공고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등의 사정
으로 공탁법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이 법원 공탁소에 형사공탁을 하였으므로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탁소 및 공탁번호
2. 공탁신청 연월일
3. 공탁물
4. 형사사건번호
5. 검찰사건번호
6. 피공탁자
7. 공탁물 출급 · 회수동의와 관련된 사항

가. 피공탁자 또는 그 대리인은 공탁소를 방문하여 공탁물을 출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소에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가 발급·송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탁규
칙 제86조제2항의 구분에 따른 법원 또는 검찰에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의 발
급 및 송부를 요청하여야 하고(공탁규칙 제86조제5항), 위 증명서가 공탁소에 접수된
이후 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 발급 및 송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은 공탁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탁금액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한 후 출급할 수 있습니다.

다. 피공탁자는 해당 공탁소에 공탁물 회수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피공탁자가 공탁소에 방문하여 공탁물 회수동의서를 제출할 경우 신분증명서를 지참
하여야 하고, 우편으로 이를 제출할 경우에는 회수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발
급일로부터 3개월 내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회수동의서에 서명한 경우:
발급일로부터 3개월 내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 확인서 발급증 첨
부)

8. 공탁물 회수와 관련된 사항

공탁자가 공탁금회수제한신고를 한 경우에는 피공탁자의 동의를 있거나 해당 형사사건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20 . . .

○○ 법원 공탁관 ○○○

[연락처 : ○○○-○○○○(○○법원 공탁계)]

[별지 제3호 양식]

○ ○ 법 원
형사공탁 정정공고

공탁소 및 공탁번호

이 사건의 형사공탁 공고문을 아래 정정사항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 아 래 -

정정사항

20 . . .

○ ○ 법 원 공탁관 ○ ○ ○

[연락처 : ○ ○ ○ - ○ ○ ○ ○ (○ ○ 법 원 공탁계)]

※ 정정 전 공고문은 법원 전자공탁홈페이지의 ‘형사공탁 공고’ 에서 관련사건번호(법원 사건번호, 검찰사건번호 등)로 검색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형사공탁사실통지서			
공탁사건 정보	공탁번호		
	공탁신청연월일		
	공탁물		
	관련사건	법원사건번호 및 사건명	
		검찰사건번호	
공탁당사자 정보	공탁자		
	피공탁자		
첨부서면의 명칭			
문서확인번호			
 <p>공탁규칙 제85조제1항에 따라 형사공탁사실을 통지합니다.</p> <p> 년 월 일</p> <p> ○○ 법원 공탁관 ○○○ (직인)</p> <p>[연락처 : ○○○-○○○○(○○법원 공탁계)]</p> 			

1. 위 통지서는 공탁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통지로서 통지서 기재 공탁금액과 공탁서상 공탁금액이 동일함을 증명하는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2. 피공탁자가 공탁금액 확인을 원하는 경우 공탁소에 방문하여 공탁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공탁서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원에서도 공탁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5호 양식]

형사공탁정정사실통지서				
공탁사건 정보	공탁번호			
	공탁신청연월일			
	공탁물			
	관련사건	법원사건번호 및 사건명		
		검찰사건번호		
공탁당사자 정보	공탁자			
	피공탁자			
정정 사항				
문서확인번호				
<p>위 정정사항과 같이 형사공탁사실통지서 기재사항이 정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법원 공탁관 ○○○ (직인)</p> <p style="text-align: center;">[연락처 : ○○○-○○○○(○○법원 공탁계)]</p>				

1.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 이를 갈음하여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1,000만 원 이하의 공탁금을 본인이 직접 청구하는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신분증을 확인) 날인 대신 서명할 수 있습니다.
2.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1,000만 원 이하인 경우 포함) 대리인의 성명, 주소(자격자대리인은 사무소)를 적고 날인(서명)하여야 하며, 이 때에는 본인의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과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3. ‘계좌입금’ 란은 계좌입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4. 피공탁자 성명란에는 공탁서에 기재된 피공탁자 성명 그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5. **공탁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이의를 유보하고 출급함)’에 하고, 공탁금 출급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이후에 민사소송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6. **‘아니오(공탁을 수락하고 출급함)’에 하고 출급하면, 공탁원인사실·공탁금액 등 공탁서에 기재된 내용을 인정하고 공탁금을 수령한 것으로 봅니다.**
7. 해당 형사사건의 무죄판결 확정을 이유로 회수하는 경우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원을, 피공탁자의 동의를 이유로 회수하는 경우에는 피공탁자의 동의서(공탁자의 회수청구에 대한 동의를 취지를 기재하고, 피공탁자의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가 제출되어 있어야 합니다.

○ ○ 법 원
형사공탁사실 고지서

사 건 20
피 고 인 (-)

이 사건에 관하여 공탁규칙 제85조제2항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1. 피해자에 대한 형사공탁사실: 별지와 같습니다.

20

재판장 ○ ○ ○ 인

※문의사항연락처 : OO법원	형사 0단독	법원사무관 ○ ○ ○
직통전화 : (○○○) ○○○ - ○○○○		
팩 스 : (○○○) ○○○ - ○○○○	e-mail :	@scourt.go.kr

○ ○ 법 원
형사공탁정정사실 고지서

사 건 20
피 고 인 (-)

이 사건에 관하여 공탁규칙 제85조제2항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1. 피해자에 대한 형사공탁정정사실: 별지와 같습니다.

20 . . .

재판장 ○ ○ ○ 인

※문의사항연락처 : OO법원	형사 0단독	법원사무관 ○ ○ ○
직통전화 : (○○○) ○○○ - ○○○○		
팩 스 : (○○○) ○○○ - ○○○○	e-mail :	@scourt.go.kr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 요청서			
청 구 인	성 명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팩스
	피해자와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피해자 본인 <input type="checkbox"/> 피해자 대리인 <input type="checkbox"/> 피해자 포괄승계인 <input type="checkbox"/> 피해자 변호사 <input type="checkbox"/> 기타()	
형사본안사건	사 건 번 호	사 건 명	재 판 부
	피해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공탁사건정보	공탁소 및 공탁번호	지방법원 금제	
	공탁서 기재 형사사건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법원	
	공탁서 기재 피공탁자 성명		
위 공탁사건정보 기재 피공탁자에 대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를 발급하여 공탁소에 송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div style="text-align: center;">20</div> <div style="text-align: center;">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div>			
송 부 일 시	20 :	송 부 방 법	
비고(증명서 발급불가사유 등)		고 지 일 시	20

1. 형사본안사건이란 형사공탁의 원인된 형사사건(상소 등으로 다른 법원에서 사건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그 사건)을 의미합니다.
2. 해당 법원에서 형사사건이 계속 중이고 법원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건의 경우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에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의 발급·송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등에 의하여 피해자가 가명처리되고 인적사항이 신원관리카드에 등재·관리되어 조서 등을 통해 피해자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사건
 - 나. 판결이 확정되어 검찰에 기록이 인계된 사건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형사본안사건	법원		고합 (형사 제 단독)
	(사건명)		
공탁사건 정보	공탁번호	지방법원	금제 형사공탁
	공탁물	(예시: 금전)	
	공탁서 기재 형사사건	법원	고단
	공탁서 기재 피공탁자 성명	(예시: 김○○)	
피공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문서확인번호			
<p>공탁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위 공탁사건의 피공탁자가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 . .</p> <p style="text-align: center;">법원</p> <p style="text-align: center;">법원사무관 (인)</p>			

형사본안사건이란 형사공탁의 원인된 형사사건(상소 등으로 다른 법원에서 사건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그 사건)을 의미합니다.

○ ○ 법 원
피공탁자 정보 제공 요구서

사 건 20

피 고 인 ○○○(-)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정보: 별지 형사공탁사실통지서 사본의 기재와 같음

공탁규칙 제86조제3항에 의하여 다음 사항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오니 이를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사항 : 공탁서 기재 피공탁자 성명, 피공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휴대전화번호)

20

재 판 장 ○ ○ ○ 인

※문의사항연락처 : ○○법원	형사 0단독	법원사무관 ○ ○ ○
직통전화 : (○○○) ○○○ - ○○○○		
팩 스 : (○○○) ○○○ - ○○○○	e-mail :	@scourt.go.kr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 (전화 등)요청 접수처리

통화일시	20 :				
청 구 인	성 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피해자와의 관계				
형사본안사건	형사사건번호	사건명	피고인명		
공탁사건정보	공탁소 및 공탁번호	지방법원	금제		
	공탁서 기재 형사사건	법원			
	공탁서 기재 피공탁자 성명				
처리 결과	발급	송부일시	20 :	송부방법	
	발급불가	사유		고지일시	
	비고				

위와 같이 처리함

○○○○법원

법원사무관 ○ ○ ○ 인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연락처

(02) 3480-7624